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정관

(2014년 10월 2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이하 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환경보전 등 농어촌 정비사업에 관한 과학,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농업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과 국제관개배수위원회와 연관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기반조성과 농어촌환경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국제관개배수위원회와 관련된 활동 및 사업
3. 국제 기술교류 및 기술정보 도입
4. 농업 및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활동, 사업 및 홍보
5. 국내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활동 강화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에 둔다.

제5조(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6조(회원)

본 위원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환경보전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어촌 종합개발에 관한 조사, 설계, 연구, 개발 및 관리, 해외농업 및 관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조사, 설계, 연구, 개발 및 관리, 해외농업 및 관련 기술 분야에 관련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로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에 의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고문, 임원은 소정의 발전기여금으로 하여금 회비에 대신한다. 회비는 본 위원회 운영규정 중 회비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제명과 탈퇴)

1. 회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또는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등

제9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5인 이내, 전임이사 1인, 이사 5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이사는 선출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 한다.
2. 선출직 이사로서 대표권을 가지는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는 다수결로 정한다.
3. 회장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무 담당 부회장과 전임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선임직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무 담당 부회장 및 전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분장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및 보충)

1.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보선한다.
2.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정원의 증가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시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명예 회장 및 부회장)

1. 본 위원회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2년 이상의 임기를 마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명예부회장이 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에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1. 본 위원회 업무의 자문을 위해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2.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에 관하여 조언과 건의를 할 수 있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1. 본 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분과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와 대의원회로 한다.

제1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회원의 1/3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 2) 예산 및 결산
 - 3)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 4) 정관변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처리 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1/3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등)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사업 시행상 중요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대의원회)

1. 대의원의 선출은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총 대의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2.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무담당 부회장이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의3(대의원회 의결사항)

1.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사임,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재선임(중임) 등
 -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회원(사)의 가입승인 및 제명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분과위원회 신설 및 폐지, 분과위원장 선출
 - 6) 기타 총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대의원회는 구성원의 1/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의결권의 평등)

1.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다른 회원,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그 위임자는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23조(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본 위원회의 재산은 회비, 사업수입,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본 위원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및 직원

제27조(사무국 및 직원)

1. 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해산

제28조(해산)

본 위원회를 해산한 때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정관의 효력발생시기)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법령 등의 적용)

본 협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강행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민법 및 규칙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본 위원회의 초대 임원의 선출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대로 한다.

4. (개정 및 시행)

- 1) 본 정관은 199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은 1999년 3월 22일 제8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3) 본 정관은 2000년 3월 22일 제9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4) 본 정관은 2004년 3월 4일 제13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5) 본 정관은 2006년 3월 7일 제15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6) 본 정관은 2010년 3월 22일 제19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7) 본 정관은 2011년 3월 22일 제20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8) 본 정관은 2013년 3월 22일 제22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9) 본 정관은 2014년 3월 21일 제23회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 10) 본 정관은 2014년 10월 23일 임시총회시 일부 개정 시행함

본 정관은 본 위원회에 비치된 정관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이사 이봉훈